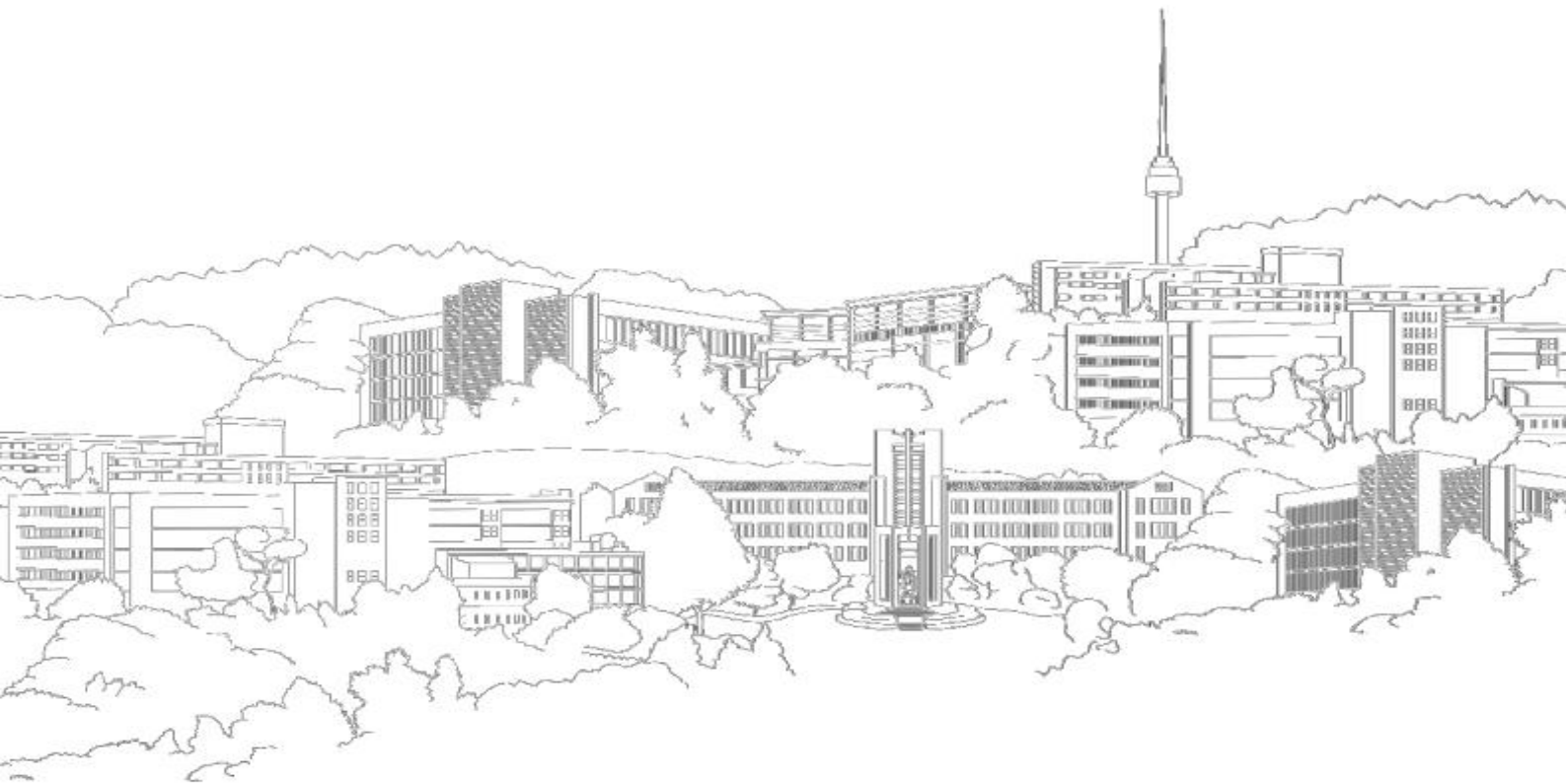

2024학년도 동국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2023.05.



■ Part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01 p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02 p
전형일정	04 p
원서접수	05 p
수험생 유의사항	07 p

■ Part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세부사항

전형방법	10 p
지원자격	12 p
최소 국외 재학·근무·체류기간	13 p
자격인정 공통사항	14 p
재학기간 인정기준	17 p
제출서류	19 p
활동증빙서류 작성 유의사항	25 p

■ Part 3.

기타

합격자 사정원칙	28 p
전형료	29 p
합격자 발표 및 등록(최초 및 충원)	30 p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32 p
합격취소 및 조건부 합격자 최종 합격 처리 ..	32 p
장학제도	33 p
제출서식	34 p

■ Part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전형일정	4
원서접수	5
수험생 유의사항	7

1. 모집인원

전형명	인문계열/ 영화영상학과	자연계열	계	비고
재외국민(일반)	33명	21명	54명	-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67명	49명	116명	최대모집 가능인원 (모집단위별 모집)
북한이탈주민	64명	49명	113명	

2. 전형방법 변경

- ▶ 재외국민(일반)/북한이탈주민 : [1단계 : 필답고사 100% / 2단계 : 지원자격 심사 P/F]
- ▶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 [일괄 : 서류종합평가 100% + 지원자격 심사 P/F]

구분	전형단계	전형방법			비고
		필답고사	지원자격 심사	서류종합평가	
재외국민(일반) / 북한이탈주민	1단계	○	-	-	6배수 선발
	2단계	-	○	-	P/F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일괄	-	○	○	서류종합평가 및 지원자격 심사(P/F)

※ 필답고사 과목(반영비율) : (인문계열/영화영상학과) 국어(50%) + 영어(50%) / (자연계열) 수학(50%) + 영어(50%)

3. 서류제출 방법 변경

서류제출 방법		
구분	2023학년도(기존)	2024학년도(변경)
서류제출	1단계 합격자 발표이후	원서접수 시 PDF파일(스캔본) 업로드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	최종등록 이후 원본서류 우편 제출

대학	모집단위		계열	모집인원	최대모집	가능인원
				재외국민 (일반)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불교	불교학부		인문	-	3	3
	문화재학과			1	2	2
문과	국어국문 · 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	인문	2	3	3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영어통번역학		2	4	4
	일본학과			1	2	2
	중어중문학과			2	2	2
	철학과			-	2	2
	사학과			1	2	2
	수학과			1	2	2
이과	화학		자연	1	2	2
	통계학과			1	2	2
	물리학과			-	1	1
	법학과			2	5	5
사회과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 행정학 북한학	인문	2	2	2
	경제학과			2	2	2
	국제통상학과			-	2	2
	사회 · 언론정보학부	사회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1	4	4
	식품산업관리학과			2	3	3
	광고홍보학과			-	2	2
	사회복지학과			2	3	3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산업보안/범죄과학/교정학		-	2	2
	경영학과			3	3	-
	회계학과			3	5	5
경영	경영정보학과		인문	1	4	4
	바이오환경과학과			1	3	3
	생명과학			1	3	3
바이오 시스템	식품생명공학과		자연	1	2	2
	의생명공학과			1	2	2
	전자전기공학부			-	2	2
공과	정보통신공학과		자연	3	5	5
	건설환경공학과			1	4	4
	화학공학과			-	3	3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2	3	3
	건축공학부	건축공학/건축학		2	3	3
	산업시스템공학과			-	3	3
	에너지신소재공학과			1	3	3
	컴퓨터공학/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공학/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엔터테이먼트테크놀로지			1	2	2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			4	5	5
AI융합	시스템반도체학부		자연	1	2	2
	국어교육과			1	-	-
사범	수학교육과		인문	1	-	-
	영화영상학과		자연	1	-	-
예술	영화영상학과		예체능	2	2	2
계				54	116	113

※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최대모집 가능인원>까지만 선발합니다.

모집 관련 유의사항

▶ 지원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지원하기 바랍니다.

- 1) **교직** 표시된 학과(전공)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로서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다만,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는 졸업시점에 전공을 결정하므로, 2학년 중 교직신청은 가능하나 졸업시점에 교직과정 설치가 안 된 전공으로 졸업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2) 전공결정 시점 - (졸업 시)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경찰행정학부
(2학년 진급 시) 영어영문학부, 건축공학부
※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의 전공결정 시점은 추후 안내 예정
- 3) 불교대학은 신입생 전원에게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며, 전과 불가(복수전공 가능)
- 4) 경찰행정학부 지원자 중 경찰 또는公安기관 등에 진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시행규칙 등 임용자격을 참고 바람
- 5) 바이오시스템대학은 우리대학 서울캠퍼스 소속 바이오메디캠퍼스(고양시)에서 수업이 이루어짐
- 6)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축공학부(건축공학전공), 산업시스템공학과 / AI융합대학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컴퓨터공학전공, 인공지능전공)의 신입생은 심화과정(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소속되며, 학과별 심화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7) 건축공학부(건축학전공)의 신입생은 심화과정(건축학교육인증제도 운영프로그램-건축사자격인증교육)에 소속되며, 이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8) 사범계열 및 교직설치학과는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전공과목, 교직과목, 성적기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을 충족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우리대학 『교직과정 이수 가이드』를 참고 바람
- 9) 영화영상학과는 예체능계열이지만 실기평가를 하지 않고 인문계열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함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미충원 시 충원원칙

▶ 각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만큼 합격자를 충원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과 순서에 따라 충원합니다.

- 1) 해당 미충원 모집단위가 속한 학부 내 타 모집단위 건제순으로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
- 2) 1번 원칙으로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과대학 내 모집단위 건제순으로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
- 3) 1번, 2번 원칙으로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 계열(인문, 자연, 예체능) 내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건제순으로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 다만, 영화영상학과 미충원 시에는 인문계열 건제순으로 충원)
- 4) 다만, 다른 모집단위에서 1명을 이월 받은 적이 있는 모집단위에 추가로 충원 기회가 올 경우 다음 순위의 모집단위에게 그 기회를 순차적으로 이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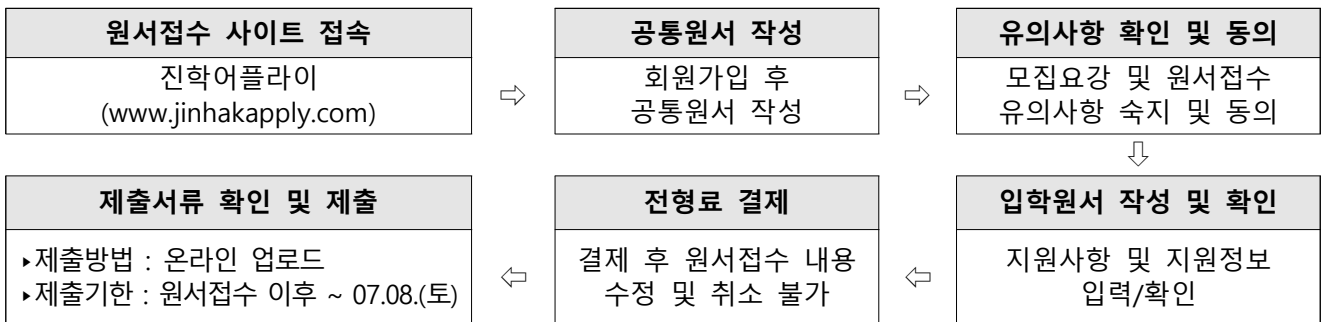
구분	일정	세부 사항
원서접수	2023.07.05.(수) 10:00 ~ 07.07.(금) 17:00	▷ 인터넷 원서접수
서류제출	2023.07.05.(수) 10:00 ~ 07.08.(토) 17:00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PDF파일 업로드 ▶ 서류제출 방법은 19~24쪽 참조 ▷ 재외국민(일반)/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북한이탈주민 공통
필답고사장 안내	2023.07.11.(화)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필답고사	2023.07.16.(일)	▷ 고사시간 ▶ 인문계열·영화영상학과 : 10:00~11:20(80분) ▶ 자연계열 : 10:00~11:40(100분) ▷ 고사장소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 고사실, 고사시간, 유의사항 등을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에서 확인
1단계 합격자 발표	2023.07.20.(목)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최초합격자 발표	2023.08.24.(목) 예정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최초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2023.12.18.(월) ~ 12.21.(목)	▷ 별도 예치금 납부 없이 온라인으로 등록의사를 확인 ▷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등록 포기로 간주
충원합격자 발표	~ 2023.12.28.(목) 18:00	▷ 1차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 2차 ~ 최종 : 개별통보
충원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 2023.12.29.(금) 16:00	▷ 별도 예치금 납부 없이 온라인으로 등록의사를 확인 ▷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등록 포기로 간주
등록금 납부	2024.02.07.(수) ~ 02.13.(화)	▷ 납부기간 전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에 안내 예정

1. 주요사항

구분		내용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3.07.05.(수) 10:00 ~ 07.07.(금) 17:00
	접수방법	▶ 온라인 원서접수(별도 방문접수 없음)
	접수처	▶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문의	▶ 진학어플라이 : 1544-7715 ▶ 동국대학교 입학처 : 02-2260-8861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우리대학 글로벌학생팀(☎02-2260-3440)에서 별도로 선발합니다.

2.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① 수시 복수지원

-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간 복수지원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회**까지 가능하며 지원횟수는 수시모집 전체(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원서접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 한해 원서접수 시간순으로 6회를 초과한 원서접수부터 취소**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입학(합격)이 취소됩니다.
- ▶ 지원횟수 산정 기준은 “대학별” 또는 “전형료납부” 기준이 아닌 각 “**전형의 원서접수**” 건수를 각각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우리대학 복수지원 허용 : 최대 5회 지원 가능(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 시 최대 6회 지원 가능)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논술/실기	실기/실적
Do Dream, Do Dream(소프트웨어),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면접형)	불교추천인재 기회균형통합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추천인재,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서류형)	논술, 실기(연극학부특기형 스포츠문화학과)	실기(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체육교육과, 미술학부, 연극학부실기형, 한국음악과)
1회	1회	1회	1회	1회

- ② 입학원서 작성 후 반드시 **전형료 결제를 마쳐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 원서접수 마감 일시 : 2023.07.07.(금) 17시 정각(접수업체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함)
 - ※ 접수 마감일 17시 정각 이전에 원서작성을 완료(원서작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을 완료한 상태)한 지원자에 한하여 17시 15분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 ③ **접수(전형료 결제) 완료 후에는 전형유형, 모집단위 변경 및 원서접수 취소가 불가**하므로 모집요강에 명시된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 ④ 지원자 인적사항은 입학원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반드시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전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 ⑤ 접수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 또는 지변, 질병, 전형일자의 사후변경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필답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기타 자세한 방법은 29쪽 참조
- ⑥ 원서접수 시 사진을 등록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므로, 원서접수 전 사진 파일(jpg, gif)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함).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가) 수시모집 복수지원

-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간 복수지원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회**까지 가능하며 지원횟수는 수시모집 전체(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원서접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 한해 원서접수 시간 순으로 6회를 초과한 원서접수부터 취소**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입학(합격)이 취소됩니다.
- ▶ 지원횟수 산정 기준은 “대학별” 또는 “전형료납부” 기준이 아닌 각 “**전형의 원서접수**” 건수를 각각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이중등록

-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 및 충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 및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정시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및 충원)는 1개 대학에만 등록(등록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 ▶ 수시모집 등록금(등록예치금 포함)을 2개 이상 대학에 납부한 경우,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 우리대학 수시모집(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 전형에 중복 합격한 경우 1개 전형에만 등록(온라인 문서등록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합격취소

-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으로 검색하여 복수지원 위반 및 이중등록 사실을 확인하며,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우리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2. 유의사항

가) 모든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사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 지원자격 미달자
- ▶ 제출서류(보완요구자료 포함) 미제출자
- ▶ 제출서류의 표절, 대리작성, 허위사실 기재, 위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
- ▶ 필답고사 결시자, 중도퇴실자, 부정행위자 및 신분증 미소지자 중 추가 신분증명을 못한 자
- ▶ 1단계 합격 후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 조건부 합격자(15쪽 참조) 중 서류 미제출자 또는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자

다) 제출서류(입학원서 포함)의 허위기재, 위변조,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출된 서류는 발급기관에 추후 확인함).

- 라) 최종합격자 중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2024년 3월 입학 시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마) 최종합격자 중 국외고등학교 및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바) 대학입학 전형 성적이 우리대학이 정한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사) 홈페이지를 통한 합격자 발표는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를 통하여 진행하며,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정(30~31쪽)을 참고하여 반드시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 아) 합격(충원합격 포함)을 통보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문서등록(등록예치금 없음)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온라인 문서등록 미등록 및 등록금 미납부 시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자) 필답고사 당일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고, 미지참 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으며 고사 시작시간 이후에는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차)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을 위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 필답고사 응시대상자 중 고사진행에 있어 별도관리가 필요한 지원자는 원서접수 직후 입학처로 연락하여 고사응시방법 등 각종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상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 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신입생 전형절차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온라인 제공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 가) 우리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해당 성적 및 합격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우리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모든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우리대학은 지원자가 입력한 정보를 입학관련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고사장 안내, 합격자 발표 안내를 위한 메일/SMS 발송 등 입학업무 진행을 위한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부정행위자 처리방침

- 가)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기재누락, 허위,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또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대학에 지원(응시)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이를 통해 우리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도 입학(합격)을 취소합니다.
- 나) 가)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전형료)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 다) 우리대학 및 타 대학에서 가)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대학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 Part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세부사항 ■

전형방법	10
지원자격	12
최소 국외 재학·근무·체류기간	13
자격인정 공통사항	14
재학기간 인정기준	17
제출서류	19
활동증빙서류 작성 유의사항	25

1. 전형방법

구분	전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비고
		필답고사	지원자격 심사	서류종합평가	
재외국민(일반) / 북한이탈주민	1단계	100%	-	-	6배수 선발
	2단계	-	P/F	-	지원자격 심사(P/F)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일괄	-	P/F	100%	서류종합평가 및 지원자격 심사(P/F)

2. 필답고사 (재외국민(일반)/북한이탈주민만 해당)

가) 필답고사 범위

계열	과목	범위
인문계열/ 영화영상학과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 등 국내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내용과 범위
자연계열	수학	수학, 수학1, 수학2 범위로 국내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내용과 범위
공통	영어	수능 영어 범위로 국내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내용과 범위

※ 교과서를 활용한 국내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

나) 필답고사 방법

계열	과목	시간	문항 수	유형	배점
인문계열/ 영화영상학과	국어 + 영어	80분 (휴식시간 없음)	국어 : 25문항(50점) 영어 : 25문항(50점)	4지선다형 객관식	각 문항별 1~3점
자연계열	수학 + 영어	100분 (휴식시간 없음)	수학 : 25문항(50점) 영어 : 25문항(50점)		

3. 지원자격 심사 안내 (재외국민(일반)/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북한이탈주민 해당)

가) 재외국민(일반)은 1단계 필답고사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자격 심사 진행

나)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는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심사 진행

다) 지원자격 심사는 지원자격의 적격여부만 판단

4. 서류종합평가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만 해당)

가) 평가방법

- ▶ 제출서류(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활동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다음의 평가항목별로 종합평가

나) 평가항목 및 반영점수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반영 비율	반영점수	
			최고점수	기본점수
학업역량	-입학 후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수학역량 -학업 수행과정에서의 주도적인 태도와 탐구 노력	40%	400점	240점
계열적합성	-학교생활 중 활동과 경험 -관련 교과목 이수 노력	30%	300점	180점
주도성 및 협업소통능력	-학교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태도 및 활동 경험	30%	300점	180점

다) 제출서류

- ▶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제출서류 목록(20쪽), 활동증빙서류 작성 유의사항(25~26쪽) 및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서식 참조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국외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전형명	세부 자격구분/특기사항	자격 요건
재외국민(일반)	국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 (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근무 상사주재원의 자녀	
	국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	
	정부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교육·출장을 목적으로 체류한 자의 자녀 (※ 유학생의 자녀 제외)	
	국외 선교사의 자녀	
	영주권 취득 국외 교포 자녀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우리나라 초·중·고(6-3-3)와 12년 교육연한을 기준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였거나 이와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 검정고시 지원 가능)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개정예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도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지원자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자의 국외 재학기간은 보호자(부모)의 해당 국가 근무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국외근무기간

- 가) 재직증명서상 명기된 국외근무기간
 나) 재직증명서상 국외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출국일 중 현재와 가까운 일자로부터,
 재직증명서상 국내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입국일 중 현재와 먼 일자까지의 기간

2. 국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기간을 제외한 기간

전형명	최소 국외 재학 · 근무 · 체류기간				
	학 생		국외근무자		국외근무자의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재외국민(일반)	3년	학생 국외재학기간의 3/4	3년	학생 국외재학기간의 2/3	학생 국외재학기간의 2/3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12년	12년	-	-	-
북한이탈주민	제한 없음		-	-	-

- 가) 위 기간은 국외근무자의 근무·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체류기간의 중첩기간 중 고등학교 과정 1개년을 포함한 최소기간을 의미합니다.
- 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합니다.)
- 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날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라)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의 재학기간은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전체 기간이며,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재학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2년 이상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 마)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 국외학교 인정기준

- 가) 국외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나) 국외학교 과정은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 교육 과정 불인정)
- 다) 국내·외 검정고시(미국·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포함) 출신자는 국외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로 불인정합니다. (※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
- 라) 초·중·고등학교 수학기간은 현행 대한민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국외학교 재학기간 심사기준

- 가) 보호자(부모)의 국외 근무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기간(고등학교 1개년 과정포함) 중 중첩되는 기간이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입니다.(보호자(부모) 근무와 학생의 재학의 미중첩기간 중 지원자의 국외학교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지원자격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나, 총 이수학기로는 인정)
- 나)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다)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라)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인정 예>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23개 학기
국외 학교								누락									누락					누락			

※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 G11-1의 누락은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불인정 예>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22개 학기
국외 학교							누락	누락									누락				누락				

※ 중복학기 G2-1~G2-2 중 한 개 학기만 G4-1~G4-2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하며, G11-1의 누락은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마) 국외재학기간 산정기준

-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바) 학기 이수여부 인정기준

- ▶ **중간/기말고사 성적이 있고, 수업일수의 2/3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또는 기말고사만 시행한 경우(초등학교 등)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3(소수점 절사) 이상**을 이수했다면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사) 유급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합니다.

3. 자격인정 기준시점 -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분	지원자 재학·체류 자격종료시점	보호자(부모) 근무·체류 자격종료시점	비고
기 졸업자	지원자 졸업일	지원자 졸업일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2023년 8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3년 8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2024년 3월 졸업예정자(일본 등)	지원자 2024년 3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4년 3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 다만, 보호자는 지원자의 졸업예정일까지 근무기간이 역년으로 3년 미만인 경우 역년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해야 함

※ **조건부 합격자** : 졸업예정자 중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본인과 보호자(부모)의 지원자격은 미충족하였으나, 졸업시점에 모든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합격통보를 받은 자

4. 자격인정 기준시점 -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자의 국외고등학교 재학기간과 국외체류기간 및 보호자(부모)의 국외근무·체류기간을 산출하여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5. 기타

- 가) 지원자격 기간 동안 보호자의 신분이동으로 자격 구분이 상이할 경우, 지원자격 해당기간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재외국민(일반) 지원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지원자격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지원자격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대학 지원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라) **국내 체류 중 국외학교 원격 수업 등의 학기 이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주요국가 학제 및 총 수학기간

국가명	학제			총 수학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국	1-6학년	7-9학년	10-12학년	12년
중 국	1-6학년	7-9학년	10-12학년	12년
미 국	1-5학년	6-8학년	9-12학년	12년
호 주	1-6학년	7-10학년	11-12학년	12년
필리핀	1-6학년 (1-8학년)	1-4학년 (9-12학년)		10년 (12년)
말레이시아	1-6학년	7-11학년(초급 3년, 상급 2년)		11년
영 국	1-6학년	7-13학년		13년
뉴질랜드	1-7학년	8-10학년	11-13학년	13년

※ 필리핀의 경우 2018년 졸업자부터 12학년제 졸업자로 인정

1. 국외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6-3-3제) 교육연한 12년 기준

나) 13년 이상 학제인 국외고등학교에서 12년 이상을 수료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는 13학년제 학교의 최종학년을 고3으로 인정하고 학년을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13년제 학교에서 12학년을 수료한 경우 고1과정은 Year 10
-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13년제 학교에서 13학년까지 이수한 경우 고1과정은 Year 11
- 13년제 → 12년제 또는 12년제 → 13년제 이동한 경우에는 불법·편법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1개 학년씩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12년 학제인 국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라) 12년 미만 학제인 국외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12년 교육과정 중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정규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국내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2. 국내고등학교 및 재외한국학교를 졸업한 경우

- ▶ 국내고등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개 학기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참고]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인정 예〉

구분	학년 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비고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A	국내학교																									X	X	23개학기
	국외학교																									X	X	
B	국내학교																									X	X	13학년제 → 12학년제 혼합이수
	국외학교 (13학년제)																											
	국외학교 (12학년제)																									X	X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불인정 예〉

구분	학년 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C	국내학교																									23개 학기미달
	국외학교																									
D	국내학교																									고교 1개 학년미달
	국외학교																									
E	국내학교																									11년제
	국외학교																									

1. 인정기준 세부사항

- 가) 국외 동일 학제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12년 이상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정
(※ 예시 : 10년제, 11년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
- 나) 학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인정
 - ▶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한 교육과정의 부족분 기간만큼은 해당국 정규 대학교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 ▶ 학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2. 기타

- 가)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나) 수학기간의 결손이 학제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시 : 국내초등학교에서 G1-1 이수 후 재외한국학교(동일 학제)에서 G1-2부터 수학한 경우, 국외에서 총 23개 학기 이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지원 불가)
- 다)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예시 : 국내초등학교에서 G1-1의 1/3 이수 후 재외한국학교(동일 학제)에서 G1-1의 나머지 2/3를 수학한 경우, 국외에서 총 24개 학기 이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지원 가능)
- 라)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로 인정합니다.

1. 재외국민(일반) /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제출서류 목록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원서접수 시 PDF파일로 업로드 제출)

번호	구 분	재외국민(일반)									전 교육 과정 국외 이수자	비 고
		공 무 원	상 사 주 재 원	국외 정부 국제 기구 근무자	정부 유치 과학기술자 /교수 요원	현지 법인 근무자	현지 자영 업자	교육 출장 목적 체류자	국외 선교사	국외 영주 교포의 자녀		
1	입학원서	○	○	○	○	○	○	○	○	○	○	• 인터넷 접수 후 출력
2	서류심사 지원서	○	○	○	○	○	○	○	○	○	○	• 인터넷 접수 후 출력
3	학력조회 동의서	○	○	○	○	○	○	○	○	○	○	• 인터넷 접수시 서식 다운로드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	
5	초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	○	○	○	○	○	○	○	○	○	• 재학기간 명기
6	중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	○	○	○	○	○	○	○	○	○	• 성적증명서에 재학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재학증명서 별도 제출
7	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	○	○	○	○	○	○	○	○	○	
8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	○	○	○	○	○	○	○	○	○	※ 각주 참고
9	보호자 재직증명서	○	○	○	○	○		○	○	○		• 국외근무지 및 국외근무기간 명기
10	정부초청 추천서			○	○							
11	국외파견 교육출장관련 증명서							○	○			
12	국외지사 설치인증서 또는 국외직접 투자신고수리서 사본		○									
13	현지법인 법인등록증 사본					○						
14	사업자 등록증(해당국) 사본						○					• 사업기간 명기
15	보호자 현지법인 법인세 납부증명서					○						• 지원자격기간 종료일 기준 역산 3년치(ex.2020.3.~2023.2.) • 법인세 납부증명서 제출이 불 가능한 경우 보호자 세금납입 증명서 혹은 급여명세서 제출
16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					• 지원자격기간 종료일 기준 역산 3년치(ex.2020.3.~2023.2.)
17	영주권 사본(학생, 부, 모)									○		• 영주권 취득일이 반드시 명기
18	여권 사본(학생, 부, 모)	○	○	○	○	○	○	○	○	○	학생만	• 국적 및 사진이 있는 부분 복사
19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부, 모)	○	○	○	○	○	○	○	○	○	학생만	• 조화기간: 지원자격기간 시작 1년 전 ~ 지원자격기간 종료 1년 후
20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 발급신청 에 대한 위임장(학생, 부, 모)	○	○	○	○	○	○	○	○	○	학생만	• 우리대학 소정서식
2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학생, 부, 모)	○	○	○	○	○	○	○	○	○	학생만	• 현지 영사관 또는 온라인 발급
22	활동증빙서류 목록표/활동증빙서류										△ (선택)	•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제출(선택)
23	국외학교 설명자료(스쿨프로파일)										△ (선택)	• 20쪽, 25~26쪽 참고
24	주민등록말소등본									○		
25	보호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26	혼인관계증명서										○	• 결혼이주민의 경우 제출
27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중국인의 경우 중국공증 처에서 공증한 원본
28	제3국 수학인증서	해당자만 제출										• 보호자 근무 현지 한국영사관

※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 해당 국외학교의 학사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지 출력물 및 브로셔 등도 가능(홈페이지 출력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 표기)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2.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제출서류 목록(상세)

- 가) '1.' 항목의 1번부터 8번까지의 공통 서류 각 1부
- 나) 지원자 여권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
- 다) 지원자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장 1부
- 라) 지원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 마) (선택)활동증빙서류 목록표 및 활동증빙서류 각 1부
 -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 제출할 증빙서류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 각 항목에 대한 활동기간, 발급일자, 발급기관, 활동내용(200자 이내) 등 작성
 - **활동증빙서류** : 지원자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완 및 증빙서류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활동한 내용만 인정
 - **증빙서류 총량 및 제출형식, 유의사항**
 - 25~26쪽 참조
- 바) (선택)국외학교 설명자료(스쿨프로파일) 1부
 - 교과과정, 학사일정 등이 설명되어있는 국외학교 발행 안내문

3. 북한이탈주민 제출서류 목록

- 가) 입학원서 1부
- 나) 북한이탈주민확인서(거주지 시·군·구 기관장 발행) 1부
- 다) 학력확인서(거주지 시·군·구 기관장 발행/국내고등학교 출신자가 아닌 경우) 1부
- 라)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국내고등학교 출신자에 한함) 1부
- 마)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검정고시 출신자에 한함) 1부

4.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가)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원서접수 시 **PDF파일로 업로드 제출**합니다.
- 나) 최종합격자는 추후 원서접수 시 업로드 제출한 서류의 **원본(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확인 포함)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최종합격 후 기한 내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본서류가 원서접수 시 업로드한 파일과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라) 근무·체류기간 관련서류는 <지원자격요건 충족기간>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는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총 수학기간 확인을 위하여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마)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 국외 발급서류는 국외에서의 재학·근무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합니다.
- 바) 제출서류별로 성명이 다를 경우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이 발행한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는 한글(또는 영문)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첨부
 - ▶ 중국어의 경우 중국정부 공증처에서 작성한 한글(또는 영문) 공증서를 함께 제출
 - ▶ 국외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날인」 또는 「재외교육기관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접수 기간 내에 제출
 - ▶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영사확인 없이 증명서 원본제출
 - ▶ 아포스티유 관련 문의처
- :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 외교부 영사 콜센터 (☎02-3210-0404)
- 아) 재외국민(일반) 지원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 입학원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차)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우리대학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카)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자격에 미달할 경우 사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타) 조건부 합격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과 보호자(부모)의 근무·거주·체류 관련 모든 서류(보호자 재직증명서,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국외파견 교육·출장 관련 증명서 등) 중에서 본인 해당서류를 졸업 직후 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 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파)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서류제출 방법

No	구분	내용
1	대상	▶ 대상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 전원
2	기간	▶ 2023.07.05.(수) ~ 07.08.(토) 17:00
3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원서접수 시 온라인 업로드 ▶ 원서접수 완료 후 「입학원서」와 「서류심사지원서」 출력하여 함께 업로드 ▶ 원서접수 완료 후 「학력조회 동의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열람 신청서」 작성하여 함께 업로드 - 서식은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또는 원서접수 후 [출력물] 탭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해당하는 모든 「지원자격 관련 서류」 구비 후 다음 방법에 따라 업로드 ① 23~24쪽 서류제출 예시 참고하여 순서 및 파일명 정리 ② PDF 이외의 파일 형식으로는 제출 불가 ③ 하나의 압축파일(ZIP)로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확인] 탭에서 업로드 ④ 압축파일의 용량은 1인 10MB로 제한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서류 요청 예정
4	합격자 서류 제출	▶ 2024.02.23.(금) (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대상자 : 최종합격자 및 조건부합격자

6. 합격 후 제출서류

대상	제출서류
2023년 7월 이후 국외고등학교 졸업자 (재외한국학교 포함)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포함 원서접수 시 업로드 했던 모든 서류
조건부 합격자	▶ 지원자 및 보호자(부모)의 국외 학적·근무·체류 관련 모든 서류 ※ 본인 지원자격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원서접수 시 업로드 했던 모든 서류

7. 서류제출 예시

- 가) 재외국민(일반) - 하나의 압축파일(ZIP)로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확인] 탭에서 업로드
- ▶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확인 포함하여 스캔 후 업로드
 - ▶ 압축파일명 : 재외국민(일반)_수험번호.zip

No	제출서류	파일명	비고
1	◎ 입학원서	1.입학원서_수험번호.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2	◎ 서류심사지원서		
3	◎ 학력조회동의서	2.학력조회동의서_수험번호.pdf	
4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3.고등학교졸업증명서_수험번호.pdf	
5	◎ 초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4.초등학교학적서류_수험번호.pdf	
6	◎ 중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5.중학교학적서류_수험번호.pdf	
7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6.고등학교학적서류_수험번호.pdf	
8	◎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7.학사일정표_수험번호.pdf	
9	◎ 재직관련서류(해당서류만 제출, 19쪽 참조) - 보호자 재직증명서 - 정부초청·추천서 - 국외파견 교육·출장관련 증명서 - 국외지사 설치인증서 또는 국외직접 투자신고·수리서 사본 - 현지법인 법인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해당국) 사본 - 보호자 현지법인 법인세 납부증명서 -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8.재직관련서류_수험번호.pdf	학생, 부, 모 순으로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10	◎ 여권 사본(학생, 부, 모)	9.여권사본_수험번호.pdf	
11	◎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부, 모)	10.출입국사실증명서_수험번호.pdf	
12	◎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장(학생, 부, 모)	11.출입국사실증명발급신청서_수험번호.pdf	
13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학생, 부, 모)	12.재외국민등록부등본_수험번호.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14	◎ 보호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3.가족관계증명서_수험번호.pdf	
15	◎ 사유서(해당자만 제출)	14.사유서_수험번호.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나)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 하나의 압축파일(ZIP)로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확인] 탭에서 업로드

- ▶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확인 포함하여 스캔 후 업로드
- ▶ 압축파일명 :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_수험번호.zip

No	제출서류	파일명	비고
1	◎ 입학원서	1.입학원서_수험번호.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2	◎ 서류심사지원서		
3	◎ 학력조회동의서	2.학력조회동의서_수험번호.pdf	
4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3.고등학교졸업증명서_수험번호.pdf	
5	◎ 초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4.초등학교학적서류_수험번호.pdf	
6	◎ 중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5.중학교학적서류_수험번호.pdf	
7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6.고등학교학적서류_수험번호.pdf	
8	◎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7.학사일정표_수험번호.pdf	
9	◎ 여권 사본(학생)	8.여권사본_수험번호.pdf	
10	◎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9.출입국사실증명서_수험번호.pdf	
11	◎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장(학생)	10.출입국사실증명발급신청서_수험번호.pdf	
12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학생)	11.재외국민등록부등본_수험번호.pdf	
13	◎ 활동증빙서류 목록표/활동증빙서류 (희망자만 제출, 20쪽 참조)	12.활동증빙서류_수험번호.pdf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 활동증빙서류] 순으로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14	◎ 국외학교 설명자료(스쿨프로파일) (희망자만 제출, 20쪽 참조)	13.스쿨프로파일_수험번호.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15	◎ 사유서(해당자만 제출)	14.사유서_수험번호.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다) 북한이탈주민 - 하나의 압축파일(ZIP)로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확인] 탭에서 업로드

- ▶ 압축파일명 : 북한이탈주민_수험번호.zip

No	제출서류	파일명	비고
1	◎ 입학원서	1.입학원서_수험번호.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2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2.북한이탈주민확인서_수험번호.pdf	
3	◎ 학력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20쪽 참조)	3.학력확인서_수험번호.pdf	
4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20쪽 참조)	4.고등학교졸업증명서_수험번호.pdf	
5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20쪽 참조)	5.검정고시합격증명서_수험번호.pdf	

1. 활동증빙서류 관련 안내

- 가)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 제출할 증빙서류에 대한 목록표
- ▶ 각 항목에 대한 활동기간, 발급일자, 발급기관, 활동내용(200자 이내) 등 작성
- 나) 활동증빙서류 : 지원자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완 및 증빙서류
-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활동한 내용만 인정
- 다) 활동증빙서류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라) 우리대학이 기술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마) 증빙서류는 추후 발급기관에 의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위변조,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및 입학한 자는 입학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제출방법

- 가) 원서접수 시, 활동증빙서류 목록표를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후 출력합니다.
- ▶ 각 항목에 대한 활동기간, 발급일자, 발급기관, 활동내용(200자 이내) 등 입력
 - ▶ 입력을 모두 완료하고 원서 저장 후 출력
- 나)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및 활동증빙서류(최대 A4 10매)를 스캔하여 원서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 ▶ 업로드 마감 기한 엄수 : 2023.07.08.(토) 17:00까지
 - ▶ 활동증빙서류 목록표가 가장 앞으로 오도록 순서를 맞춰 스캔
 - ▶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순번과 활동증빙서류 순서가 일치하도록 정렬한 후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 다) 최종합격자는 활동증빙서류 목록표(출력본) 및 증빙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3. 활동증빙서류 예시

- 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활동한 내용만 인정

서류 구분	예시
1) 교내활동서류	교내수상, 동아리 등 교내활동에 대한 학교장 발급서류
2) 봉사활동서류	교내외 봉사활동에 대한 서류(고교 또는 교외 발급기관 명시)
3) 표준화 학력서류	해당국가의 졸업학력고사 및 대학진학평가 성적증명서, 표준학력시험 결과 발급서류 - IB, AP, SAT 성적 등(진위여부 확인 수단 필요)
4) 공인어학성적	- TOEIC, TOEFL, TEPS, IELTS, HSK, JLPT 등(진위여부 확인 수단 필요)

- 나) 3)표준화 학력서류 및 4)공인어학성적의 경우 진위여부 확인 수단 필요(유의사항 참조)

4. 활동증빙서류 작성 유의사항

- 가) 활동증빙서류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활동 내역만을 기재하며, 그 외 기간의 활동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나) 활동증빙서류 총량
- ▶ A4 사이즈의 규격으로 단면 기준 총 10매 이내로 제한(흑백, 컬러 모두 가능)
 - 축소 및 양면 복사 금지
 - 아포스티유 페이지, 번역 공증 페이지 등은 증빙자료 매수에 포함되지 않음
 - 국외고 성적증명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활동증빙서류 목록표에 작성 후 증빙서류로 구성하여 제출 가능(증빙서류 PDF 업로드 및 매수 포함)
- 다) 활동증빙서류 상단에 페이지 번호,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합니다.(실제 평가 시 수험번호, 성명 블라인드 처리)
- 라) 활동증빙서류 목록표의 활동 순서(연번)와 활동증빙서류의 순서가 일치해야 합니다.
- 마) 표준화 학력서류, 공인어학성적의 경우 제출 시 활동증빙서류 하단에 검증 방법(해당 성적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웹사이트주소, ID, PW 등))을 별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검증 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활동증빙서류 목록표에 작성했으나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바) **고등학교 활동 관련 증빙서류는 소속 고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사) 모든 서류는 한국어(또는 영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아) 제출불가 증빙서류 및 형식
- ▶ 비문서 형태의 자료(CD, 동영상, 메달 및 트로피 사진 등), 개인창작자료(에세이, 소감문 등), 추천서(교사 작성 등), 자기소개서 등은 제출 불가
- 자) 공식적인 문서로 증빙이 가능한 서류만 인정하며,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차) 증빙서류는 추후 발급기관에 의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위변조,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및 입학한 자는 입학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Part 3. 기타 ■

합격자 사정원칙	28
전형료	29
합격자 발표 및 등록(최초 및 충원)	30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32
합격취소 및 조건부 합격자 최종 합격 처리	32
장학제도	33
제출서식	34

1. 모집단위별로 전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최종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형명	계열	동점자 처리기준
재외국민(일반) / 북한이탈주민	인문계열/영화영상학과	① 필답고사 국어 성적 상위자 ② 필답고사 국어 고배점 문항 성적 우수자 ③ 필답고사 영어 고배점 문항 성적 우수자
	자연계열	① 필답고사 수학 성적 상위자 ② 필답고사 수학 고배점 문항 성적 우수자 ③ 필답고사 영어 고배점 문항 성적 우수자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공통	① 서류평가 <학업역량> 항목 성적 상위자 ② 서류평가 <계열적합성> 항목 성적 상위자 ③ 서류평가 <주도성 및 협업소통능력> 항목 성적 상위자

※ 재외국민(일반)/북한이탈주민 : 1단계 성적 동점자는 2단계 서류심사 대상자로 모두 선발합니다.

2. 최종단계까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사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 지원자격 미달자
- ▶ 제출서류(보완요구자료 포함) 미제출자
- ▶ 제출서류의 표절, 대리작성, 허위사실 기재, 위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
- ▶ 필답고사 결시자, 중도퇴실자, 부정행위자 및 신분증 미소지자 중 추가 신분증명을 못한 자
- ▶ 1단계 합격 후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 조건부 합격자(15쪽 참조) 중 서류 미제출자 또는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 요건 상실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자

4. 대학입학 전형성적이 우리대학이 정한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신입생 전형절차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1. 전형료

전형료를 결제하여야 원서접수가 완료됩니다. 미납부 시 입학원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전형명	모집단위	1단계 전형료	2단계 전형료
재외국민(일반)	공통	90,000원	50,000원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100,000원	
북한이탈주민		90,000원	10,000원

※ 1단계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전형료 환불 및 금액

- ▶ 전형료 환불 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합니다.
- ▶ 접수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 또는 지변, 질병, 전형일자의 사후변경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필답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1단계에 불합격하더라도, 반환되는 전형료는 없습니다.
- ▶ 명백한 지원자격 미달 등 수험생의 귀책으로 인한 접수 취소 및 전형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구분	환불금액	비고
천재 또는 지변 전형일자의 사후 변경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질병으로 인한 필답고사 미응시	55,000원	▶ 환불신청서(소정서식), 병원장 발행 진료 또는 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환불신청기한 : 고사일로부터 5일 이내 17:00까지
접수취소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환불 신청한 건에 한함 ▶ 수시 최대 6회 복수지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함

3. 전형료 지출잔액 발생 시 환불 안내

- ▶ 우리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발생 시, 전형료 잔액을 2024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우리대학 직접 방문 수령
- ▶ 다만,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전산망 이용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초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최초합격자 발표

구분	발표일자	발표방법
1단계 합격자 발표	2023.07.20.(목)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안내 ▶ 합격자에게 개별통보하지 않음
최초합격자 발표	2023.08.24.(목)	

※ 최초합격자 발표 시 충원합격자에 적용되는 예비순위도 발표합니다.

2. 등록방법

구분	세부사항
최초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별도 등록예치금 없음)	▶ 2023.12.18.(월) ~ 12.21.(목) 16:00 ▶ 별도 예치금 납부 없이 온라인으로 등록의사를 확인함 ▶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등록금 납부	▶ 2024.02.07.(수) ~ 02.13.(화) 16:00 ▶ 등록금액 : 등록기간 전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안내
유의사항	▶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더라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 후 등록포기자'로 처리하니 반드시 해당기간에 등록을 완료하기 바람 ▶ 등록금 납부방법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고지서 출력 - 우리대학 지정은행 납부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은행에서 제공하는 자연이체서비스, 개인사유 등 기간 내 미입금 처리에 따른 합격 취소에 유의 ▶ 납부확인방법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확인

※ [참조] 2023학년도 등록금 현황

계열	수업료	비고
인문/사회계열	3,673천원	입학금 폐지
이학/체육계열	4,229천원	
공학/예능계열	4,784천원	
약학계열	5,862천원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충원합격자 발표

전형명	발표일정	발표방법
재외국민(일반)/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2023.12.22.(금) ~ 12.28.(목) 18:00 ※ 세부일정 홈페이지 안내 (수시모집 충원합격자 발표일정에 진행)	▶ 1차 : 입학처 홈페이지 안내 ▶ 2차 ~ 최종 : 개별통보

2. 등록방법

구분	세부사항
충원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별도 등록예치금 없음)	▶ 충원합격자 등록은 합격 통보 시 등록기간 및 방법 안내 예정 ▶ 최종충원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마감일시 : 2023.12.29.(금) 16:00 ▶ 별도 예치금 납부 없이 온라인으로 등록의사를 확인함 ▶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등록금 납부	▶ 2024.02.07.(수) ~ 02.13.(화) 16:00 ▶ 등록금액 : 등록기간 전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안내
유의사항	▶ '충원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더라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 후 등록포기자'로 처리하니 반드시 해당기간에 등록을 완료하기 바람 ▶ 등록금 납부방법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고지서 출력 - 우리대학 지정은행 납부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연이체서비스, 개인사유 등 기간 내 미입금 처리에 따른 합격 취소에 유의 ▶ 납부확인방법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 확인

3. 유의사항

- ▶ 합격 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는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등록금 납부방법 및 합격자 유의사항은 공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재외국민 특별전형 예비합격순위자 중 충원발표기간 **연락 두절로 충원합격통보가 되지 않더라도 합격자로 처리되어 정시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원서접수 시 등록한 연락처가 변경된 지원자는 반드시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예비순위자는 충원합격 통보 종료일인 2023.12.28.(목) 18:00까지 여행을 자제하고 연락이 가능한 곳에서 충원합격 통보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 ▶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가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1.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구분	세부사항
대상	▶ 우리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취소하고 환불받고자 하는 자 ※ 등록포기 시 이를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24.02.19.(월) 15:00까지
신청방법	▶ 신청기한에 따라 상이함(신청기한에 따른 신청방법 추후 홈페이지 안내) ① 온라인 신청(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 수험생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② 입학처 유선통보 후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신청 시 제출 서류 :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서, 지원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각 1부, 통장사본

1. 합격취소

- 가) 우리대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의 최종합격(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취소 대상자 및 내용

- ▶ 조건부 합격자(15쪽 참조) 중 서류 미제출자
- ▶ 조건부 합격자 중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자
- ▶ 전형 종료 후 복수지원 위반 및 이중등록 사실이 적발된 자
- ▶ 제출서류(입학원서 포함)의 허위 기재, 위변조,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
- ▶ 입학 시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자
- ▶ 대학입학 전형 성적이 우리대학이 정한 기준보다 현저히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조건부 합격자 최종 합격 처리

- 가) 조건부 합격자 : 15쪽 참조
 나) 최종 합격 처리

: 조건부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과 보호자(부모)의 근무·체류 관련 모든 서류(보호자 재직증명서,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국외파견 교육·출장 관련 증명서 등) 중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를 졸업 직후 입학실로 제출 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요건 충족 시 최종 합격 처리

장학제도는 추후 모집요강에 변경 공지 예정입니다.

■ 제출서식 ■

학력조회 동의서

Official Agreement for Enrollment and Academic Credits

본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국대학교가 본인의 학적과 성적을 조회할 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chool Name : (_____)

School Address : (_____)

School E-mail Address : (_____)

School TEL : (_____), FAX : (_____)

To whom it may concern :

Student Full Name : (_____)

Date of birth : (_____) / (_____) / (_____)
(month) (day) (year)

Date of admission : (_____) / (_____) / (_____)
(month) (day) (year)

Date of graduation : (_____) / (_____) / (_____)
(month) (day) (year)

I am the above person who is (or was) a student of your school. I have applied to Dongguk University in Korea for 2024 academic year and I have agreed that Dongguk University can make a request to you for my school record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ask you to provide full assistance to Dongguk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

Date : 2023 . _____ . _____

Applicant Name : _____ Signature : _____

Office of Admissions , Dongguk University

30, Pil-dong-ro 1-gil(26, Pil-dong 3-ga), Jung-gu, Seoul, 100-715, Korea

Tel : 82-2-2260-8861

Fax : 82-2-2260-3696

E-mail : ipsi@dongguk.edu

Homepage : <http://ipsi.dongguk.edu>

국외학교 학력 및 성적조회 시 첨부할 지원자의 동의서 서식입니다. 위 동의서의 ()안의 내용을 재학한 국가의 언어(영어)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재학한 학교의 수만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 한 개의 학교 12년 재학 시 초, 중, 고등학교 과정 포함하여 총 1장
세 개의 학교 3년(고등학교 과정) 재학 시 학교 당 각 1장씩 총 3장)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19. 6. 11.>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참고용)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Certification of Fact will be issued for free on the government website at www.gov.kr if you apply online. When visiting an office and applying in person, you only need to present your ID card, without having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	-----------------------	---------------------	-----------------------------	---------------------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홍길동	연락처 (Phone No.) 000-0000-0000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000000-0000000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time(s)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 포함 Yes ☐ 미포함 No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	---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지원자격기간 1년 전 부터(from) 2024.03.01 까지(to)	
용도 (Purpose)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 출입국 사실 확인용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동국대학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02-2260-8861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동국대학교 입학 관계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City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Town Office, Township Office, Community Center 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홍길동**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210mm×297mm[백상지(80 g/m²) 또는 중질지(80 g/m²)]

※ 인터넷 원서접수 시 또는 입학처 홈페이지 기출문제/서식 탭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및 활동증빙서류(선택)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및 활동증빙서류(선택)

전 형 명		모집단위	
성 명	(평가 시 해당정보 블라인드)	수험번호	(평가 시 해당정보 블라인드)

작성 유의사항

1. 활동증빙서류 관련 안내

- ① 본 서식은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의 교내활동 및 학업증빙관련 제출서류 양식입니다.
- ② 활동증빙서류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③ 우리대학이 기술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④ 증빙서류는 추후 발급기관에 의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위변조,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및 입학한 자는 입학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제출방법

- ① 원서접수 시, 활동증빙서류 목록표를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후 출력합니다.
 - ▶ 각 항목에 대한 활동기간, 발급일자, 발급기관, 활동내용(200자 이내) 등 입력
 - ▶ 입력을 모두 완료하고 원서 저장 후 출력
- ②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및 활동증빙서류(최대 A4 10매)를 스캔하여 원서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 ▶ 업로드 마감 기한 엄수 : 2023.07.08.(토) 17:00까지
 - ▶ 활동증빙서류 목록표가 가장 앞으로 오도록 순서를 맞춰 스캔
 - ▶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순번과 활동증빙서류 순서가 일치하도록 정렬한 후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 ③ 최종합격자는 활동증빙서류 목록표(출력본) 및 증빙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3. 활동증빙서류 예시

- 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활동한 내용만 인정

서류 구분	예시
1) 교내활동서류	교내수상, 동아리 등 교내활동에 대한 학교장 발급서류
2) 봉사활동서류	교내외 봉사활동에 대한 서류(고교 또는 교외 발급기관 명시)
3) 표준화 학력서류	해당국가의 졸업학력고사 및 대학진학평가 성적증명서, 표준학력시험 결과 발급서류 - IB, AP, SAT 성적 등(진위여부 확인 수단 필요)
4) 공인어학성적	- TOEIC, TOEFL, TEPS, IELTS, HSK, JLPT 등(진위여부 확인 수단 필요)

- ② 3)표준화 학력서류 및 4)공인어학성적의 경우 진위여부 확인 수단 필요(유의사항 참조)

작성 유의사항

4. 활동증빙서류 작성 유의사항

- ① 활동증빙서류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활동 내역만을 기재하며, 그 외 기간의 활동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② 활동증빙서류 총량
 - ▶ A4 사이즈의 규격으로 단면 기준 총 10매 이내로 제한(흑백, 컬러 모두 가능)
 - 축소 및 양면 복사 금지
 - 아포스티유 페이지, 번역 공증 페이지 등은 증빙자료 매수에 포함되지 않음
 - 국외고 성적증명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활동증빙서류 목록표에 작성 후 증빙서류로 구성하여 제출 가능(증빙서류 PDF 업로드 및 매수 포함)
- ③ 활동증빙서류 상단에 페이지 번호,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합니다.(실제 평가 시 수험번호, 성명 블라인드 처리)
- ④ 활동증빙서류 목록표의 활동 순서(연번)와 활동증빙서류의 순서가 일치해야 합니다.
- ⑤ 표준화 학력서류, 공인어학성적의 경우 제출 시 활동증빙서류 하단에 검증 방법(해당 성적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웹사이트주소, ID, PW 등))을 별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검증 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활동증빙서류 목록표에 작성했으나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⑥ 고등학교 활동 관련 증빙서류는 소속 고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⑦ 모든 서류는 한국어(또는 영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⑧ 제출불가 증빙서류 및 형식
 - ▶ 비문서 형태의 자료(CD, 동영상, 메달 및 트로피 사진 등), 개인창작자료(에세이, 소감문 등), 추천서(교사 작성 등), 자기소개서 등은 제출 불가
- ⑨ 공식적인 문서로 증빙이 가능한 서류만 인정하며,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⑩ 증빙서류는 추후 발급기관에 의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위변조,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및 입학한 자는 입학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확인 서약

- ※ 본인은 유의사항 및 제출관련 안내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 ※ 제출한 활동증빙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
- ※ 증빙서류 목록표 및 증빙서류에 작성된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허위 사실 기재나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동의 ☐)

2023년 00월 00일

지원자 확인 완료 ☐

동 국 대 학 교 총 장 귀하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및 활동증빙서류 작성방법

1.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 가. 서류구분 : ①교내활동서류/ ②봉사활동서류/ ③표준화 학력서류/ ④공인어학성적 중 택 1
 나. 서류명 : 활동의 명칭을 기재하고, 유사한 성격의 활동은 1개의 활동명으로 기재
 다. 활동기간 또는 발급일자 : ①,② 경우- 활동기간 기재 / ③,④ 경우- 서류 발급일자 기재
 라. 서류 발급기관 : 증빙서류 발행처 기재
 마. 활동내용 : 증빙서류 상의 활동내용을 200자 이내로 기재(띄어쓰기 포함)
 바. 해당 페이지 : 서류명에 해당하는 페이지 번호 기재

2. 활동증빙서류[A4용지 단면 기준 10페이지 이내 제출 가능(축소/양면 복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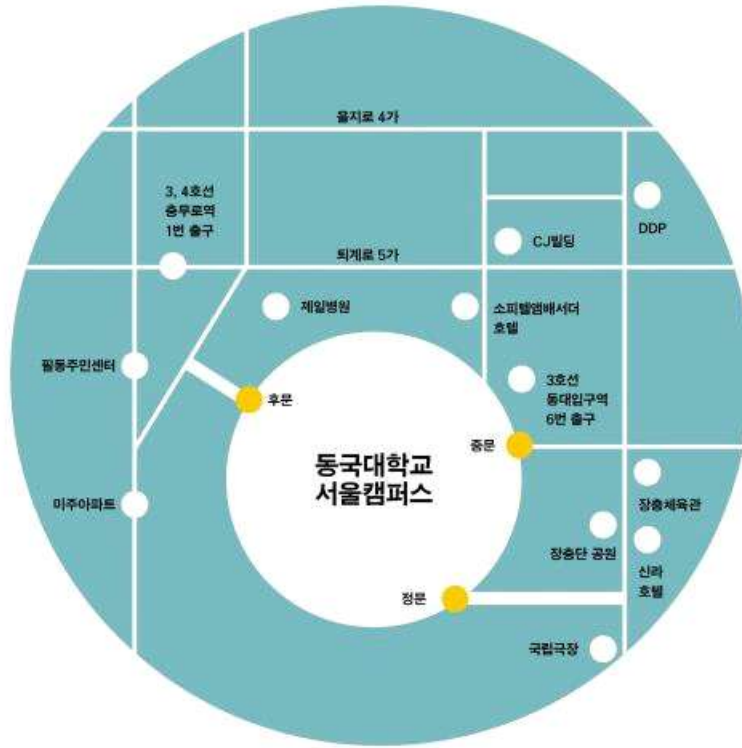
- 가. 활동증빙자료 상단에 페이지 번호,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실제 평가 시 수험번호, 성명 블라인드 처리)
 나. 증빙자료 목록표의 활동(연번)순서와 증빙자료의 순서가 일치
 다. 비문서 형태(사진, 동영상 등), 개인창작자료(소감문 등), 추천서(교사 작성 등) 제출금지
 라. 모든 서류는 한국어(또는 영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언어로 작성 된 문서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마. 확인서약 페이지,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아포스티유 페이지, 번역 공증 페이지 등은 증빙자료 매수에 포함되지 않음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순번	서류구분	서류명	①② 경우: 활동기간 ③④ 경우: 발급일자	서류 발급기관	활동내용 (200자 이내)	해당 페이지
1	①~④ 중 택 1					
2						
3						
4						
5						
6						
7						
8						
9						
10						

※ 첨부 : 증빙자료 총 ()페이지(단면 기준 10매 이내)

※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가능합니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이용 | 3, 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이용

버스

장충동(동국대 입구)

지선버스 : 7212 | 간선버스 : 144, 301, 407, 420

대한극장 앞

지선버스 : 7011 | 간선버스 : 104, 105, 140, 421, 463, 507, 604

자가용

모든 자동차의 출입은 '동국대 정문'으로만 가능

분당방면 : 한남대교 → 남산국립극장 400m 전방 → 동국대 정문

강남방면 : 동호대교 → 장충체육관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200m 전방 → 동국대 정문

용산방면 : 남산2호터널 통과 후 좌회전 100m 전방 → 동국대 정문

동대문방면 : 장충사거리 200m 전방 → 동국대 정문

※ 우리대학 입학처 방문 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동대입구역 방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각종 고사에 응시하는 경우 안내된 고사장과 가까운 지하철 역 또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